

국외유학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규정

정	2002년	6월	18일
1차 개정	2003년	3월	04일
2차 개정	2004년	1월	29일
3차 개정	2005년	3월	10일
4차 개정	2005년	11월	28일
5차 개정	2007년	3월	15일
6차 개정	2007년	12월	17일
7차 개정	2009년	3월	23일
8차 개정	2010년	3월	19일
9차 개정	2011년	3월	25일
10차 개정	2012년	3월	27일
11차 개정	2014년	3월	24일
12차 개정	2015년	3월	30일
13차 개정	2016년	3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외 우수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 중 바람직한 품성을 갖고 창의성 및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문, 사회, 과학, 문화 등 학문의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발대상) 본 재단의 국외유학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국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보유자는 제외)로 한다. 고등학교라 함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해당학교과정의 교과를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외교관, 주재원 등 학부모의 국외근무로 부득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조(유학대상국 및 선발인원) 본 재단의 국외유학 장학생 수학대상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위스 등 13개국으로 하고 선발인원은 연간 최대 100명으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 본 재단 장학생 지원자는 이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학 대상 국가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신규입학하려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미국의 경우

1. 학부과정 지원자는 미국의 우수대학(국외유학장학생선발규정시행규칙 별표 2)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당해 연도 말까지 입학하는 자.
2. 선발연도의 다음 해 봄학기까지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자(이하 “예비장학생”이라 칭함)
3. 대학원과정 지원자는 우수학과별 소속대학(국외유학장학생선발규정시행규칙 별표3)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당해 연도 말까지 입학하는 자
4. 예비장학생은 선발연도의 다음 해 봄학기까지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자

② 미국을 제외한 국가(10개국)의 경우

1.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모두 유학 대상 국가별 우수대학(국외유학장학생선발 규정시행규칙 별표2)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당해 연도 말까지 입학하는 자.
2. 예비장학생은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모두 선발연도의 다음 해 봄학기까지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할 수 있는 자

③ 위 1항 2호, 1항 4호, 2항 2호에 해당하는 “예비장학생”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대상국별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유학 대상 국가별 우수대학 및 우수학과 소속대학과 제 3항의 대상국별 어학 능력은 본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격제한)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의 경우 장학생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① 보호자 등의 유학비 부담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제4조 1항 2호, 1항 4호, 2항 2호에 해당하는 “예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모두 선발연도의 봄학기까지 입학하지 못한 경우
- ③ 다른 장학금을 받기로 한 경우
- ④ 과거 본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장학생학사관리규칙”에 의하여 장학생 자격이 박탈된 경우

6조(과정별 연령제한)

- ① 입학허가장학생으로 군필지원자(여성 및 면제자 포함)일 경우에는 학부과정은 만 24세, 석사과정은 만 30세, 박사과정은 만 3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학할 수 있는 자로 지원연령을 제한한다. 단,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학부과정은 만 20세, 석사과정은 만 25세, 박사과정은 만 2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학할 수 있는 자로 지원연령을 제한한다.
- ② 입학예비장학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의 과정별 연령제한에 관해 다음 해 입학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선발비율)

- ① 국외유학 장학생의 계열별 선발비율은 자연이공계열 80% 이상, 인문사회계 및 예능계열은 20% 이내로 한다.
- ② 국외유학 장학생의 과정별 선발비율은 박사과정 70%, 석사과정 20%, 학부과정 10%로 한다. 단 지원 상황에 따라 각 비율의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③ 국외대학(대학원 포함)으로부터 입학허가를 이미 받은 자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자(예비장학생)의 선발비율은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정한다.

제8조(장학생선발, 특별선발)

- ① 국외유학장학생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발한다.
- ②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선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나 학과의 국제적 우수성, 본인의 우수성, 장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수혜기간)

- ① 장학금지급은 학부는 4년, 석사 과정은 2년, 석박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석박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혜자 중 수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성적의 부진 등으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학사관리규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성실성 부족 등으로 중도에 휴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의1(수혜기간 연장신청) 동 규정 제 9조에 의한 장학금 수혜기간이 만료된 자가, 수혜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혜연장신청공지에 따른 서류를 본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0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해당 대학이 발급한 등록금 납부 통지서를 해당 장학생이 본 재단에 제출해야 지급되며 년 2회 나누어 지급한다.

제11조(장학금액) 국외유학 대상국별 장학금 지급액은 대상국가(지역) 등에 따라 본 재단이 결정하고 대상국별 연간장학금 최고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본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단 TA, RA 활동으로 학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보조금액을 감안하여 장학금을 산정하되 재단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별, 과정별 지급상한액 내에서 산정한다.

제12조(제출서류)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본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고 및 합격자 발표)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중 국외유학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하고 신속한 기간 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4조(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본 재단은 국외유학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재단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5조(가산점 부여) 국외유학 장학생 선발심사에서 권위 있는 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자는 장학생선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 의무)

- ① 본 재단 장학생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력하여야 하며 본 재단 및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본 재단 장학생은 본 재단의 제반규정이나 규칙,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재단 장학생간의 교류와 유대강화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매 학기성적이 나오는 대로 그 성적표를 본 재단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 ⑤ 만약 제①항내지 제④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생자격박탈, 기 지급된 장학금의 회수 등의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장학실무소위원회) 본 재단은 장학생 선발, 관리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실무소위원회”를 둔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본 규정 시행규칙 및 각종 내규와 재단 “장학실무소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3월 4일부터 1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3일부터 2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3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4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15일부터 5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6차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장학금수혜기간)의 규정은 2008년 선발된 7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부터 7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8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선발된 9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9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10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11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12차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13차 개정 시행한다.